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99-18

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가독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낙독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 읍·면 : 2,000원 2) 동 : 3,000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증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증전의 예에 의한다.

포 비 안 대 정 수

행	정 안	정 안
<p>제20조(세율) ① 관동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개인</u></p> <p>가. <u>시내에 주소불 둔 개인</u></p> <p style="padding-left: 20px;">1) <u>읍·민: 1,000원, 2) <u>동: 1,800원</u></u></p> <p>나. <u>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u></p> <p style="padding-left: 20px;">50,000원</p> <p>2. <u>법인</u></p> <p style="padding-left: 20px;">(표 생략)</p>	<p>제20조(세율) ① -----</p> <p>-----</p> <p>1. <u>개인의 세율</u></p> <p>가. <u>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불 둔 개인</u></p> <p style="padding-left: 20px;"><u>의 세율</u></p> <p style="padding-left: 40px;">1) <u>읍·민: 2,000원, 2) <u>동: 3,600원</u></u></p> <p>나. <u>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50,000원</p> <p>2. <u>법인의 표준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표 현행과 같음)</p>	<p>수 정 안</p> <p>제20조(세율) ① -----</p> <p>-----</p> <p>1. <u>개인의 세율</u></p> <p>가. <u>시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불 둔 개인</u></p> <p style="padding-left: 20px;"><u>의 세율</u></p> <p style="padding-left: 40px;">1) <u>읍·민: 2,000원, 2) <u>동: 3,000원</u></u></p> <p>나. <u>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50,000원</p> <p>2. <u>법인의 표준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표 현행과 같음)</p>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8

제출년월일 : '99. 5.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개정('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따른 김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김제시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

주민세의 세율중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20조)

(현 행)

(개 정)

○개 인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읍·면 : 1,000원, 동 : 1,800원

→

○개인의 세율
·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읍·면 : 2,000원, 동 : 3,600원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
- 전북도세정 13400-1427('98. 12. 30)호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 읍·면 : 2,000원 2) 동 : 3,600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u>1. 개인</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p> <p style="padding-left: 40px;">1)읍·면: 1,000원 2)동: 1,800원</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p> <p style="padding-left: 40px;">50,000원</p> <p><u>2. 법인</u></p> <p style="padding-left: 20px;">(표 생략)</p>	<p>제20조(세율) ①-----</p> <p>-----</p> <p><u>1. 개인의 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p> <p style="padding-left: 40px;">1)읍·면: 2,000원 2)동: 3,600원</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개인의 표준세율</p> <p style="padding-left: 40px;">-----</p> <p><u>2. 법인의 표준세율</u></p> <p style="padding-left: 20px;">(표 현행과 같음)</p>